

# 온라인을 통한 행정심판 수행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김정대 · 강현철



# 온라인을 통한 행정심판 수행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연구자: 김정대 (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CONTENTS

Issue Paper

## I. 검토의 필요성 및 목적 04

## II. 검토 범위 및 방법 06

## III. 주요 행정심판 운영 현황 07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7

2. 조세심판원 11

3. 소청심사위원회 13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5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17

6. 특허심판원 20

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4

## IV. 온라인 심판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6

1. 조세심판원 26

2.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7

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8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8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특허심판원 28

## V. 결론 30



## I. 검토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달,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대량 보급 등에 힘입어 사인간의 상품 거래나 서비스 이용(인터넷 बैं킹이나 모바일 बैं킹 등), 의사소통이나 관계 형성과 같은 민간 영역 뿐만아니라 민원 신청이나 전자소송의 진행 등 공공서비스 부문까지 온라인의 활용이 보편화된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 특히,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목적으로 2007년 「전자정부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 또한, 같은 법에 따르면,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발전을 추진할 때 ①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②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③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의 확보, ④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⑤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⑥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등 이상 6가지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는 제도로서,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의 기능과 같지만 법원이 아닌 독립성이 확보된 별도의 행정기관에서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며, 행정소송에 비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장점을 지녔다.

- 
- 이러한 행정심판 서비스는 준사법적 지위를 갖기는 하나,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의 예외라할 수 없을 것인바, 행정심판 청구 및 접수 등 관련 구제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온라인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권익구제 서비스 제공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온라인을 통한 분쟁해결의 장점 및 기대효과, 온라인시스템 구축 체계, 보안 및 해킹 방지 등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온라인 행정심판제도 도입방안 연구, 2003년, 이화여자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 진행에 있어 「행정심판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운영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등 온라인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 진행의 법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 만일, 국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심판청구서, 증거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가 실제로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 온라인 절차의 효력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법적인 공백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법적근거 마련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II. 검토 범위 및 방법



-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뿐만 아니라 약 71개의 특별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특별행정심판 제도에 관한 연구, 2009. 12.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본 연구에서는 각급 행정심판 기관의 온라인을 통한 사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행정심판법」과 주요 특별행정심판의 근거법령을 분석하여 해당 법률에 온라인을 통한 행정심판 제도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기로 하며, 특히 주요 특별행정심판 기관 중 사건처리 건수나 비중 등을 감안하여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특허심판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 구체적으로 최근 3년 간 각급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현황, 온라인을 통한 행정심판 청구 건수, 온라인 행정심판에 대한 근거 법령 현황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특히, 실제로 온라인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증거서류 제출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근거 법령에 온라인 심판 청구나 증거 서류의 효력, 온라인 제출 시 제출기간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지, 얼마나 정밀하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여 법적 근거의 미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 Ⅲ. 주요 행정심판 운영 현황



####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가. 최근 3년간 사건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분	접수	처리				인용률	취하·이송
		계	인용	기각	각하		
2014년	25,301	25,270	4,131	19,164	1,975	16.3	1,068
2015년	24,425	24,947	3,933	18,627	2,387	17.4	1,433
2016년	26,730	26,080	3,901	19,315	2,864	16.8	1,699

##### 나. 온라인 심판 청구 현황

〈단위 : 건, %〉

구분	전체 건수	온라인 건수	온라인 비율
2014년	25,301	3,734	14.8
2015년	24,425	5,439	22.3
2016년	26,730	7,364	27.5



## 다. 행정심판 절차 규정

### a. 행정심판 청구 및 접수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 2. 피청구인과 위원회,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5.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6.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을 적시한 청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8조)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4조)

### b.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심판법 제27조)

### c. 심판청구서의 보정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으로 보정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보정요구를 받는 경우 서면으로 보정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2조)

### d. 보충서면의 제출

행정심판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참가신청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충서면 부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보충서면을 받는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그 부분을 송달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3조)

### e. 증거서류 등의 제출

행정심판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참가신청서·보충서면 등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고, 이때, 증거서류에는 다른 당사자

의 수 만큼 증거서류 부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받은 증거서류의 부분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4조)

#### f. 재결서 송달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하고, 참가인이 있는 경우 재결서의 등본을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만일,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8조)

#### 라. 온라인 행정심판 절차 규정

「행정심판법」은 온라인을 통한 행정심판 청구서의 제출, 온라인 제출 시 부분 제출의 면제, 온라인 접수의 효력, 온라인 제출 시 청구기간, 온라인 송달의 효력 등에 대해 별도의 장을 통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 제7장

제52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자는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원회에서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행정심판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보며, 부분을 제출할 의무는 면제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접수된 심판청구의 경우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접수가 되었을 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내용,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전자서명등) ① 위원회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려는 자에게 본인(本人)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나 그 밖의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전자서명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등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서명 또는 날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전자서명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①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심판참가를 한 자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결서나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나 참가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하는 재결서 등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 사실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서류 송달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청구인이 제2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⑤ 서면으로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를 한 자가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2조·제53조 및 이 조를 준용한다.
- ⑥ 위원회, 피청구인,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제52조·제53조 및 이 조를 준용한다.
- ⑦ 제1항 본문에 따른 송달의 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조세심판원

### 가. 최근 3년간 사건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분	접수	처리						인용률	이월
		계	취하	각하	기각	재조사	인용		
2014년	8,474	8,750	163	482	6,200	465	1,440	17.7	2,127
2015년	8,273	8,177	222	459	5,579	611	1,306	17.8	2,223
2016년	6,003	6,628	163	506	4,322	299	1,388	21.7	1,598

### 나. 온라인 심판 청구 현황

온라인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온라인 청구서 제출 이후 별도로 우편에 의한 서면 제출을 요구하며, 온라인 청구에 대한 별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온라인을 통한 처리 건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 내용)

## 다. 행정심판 절차 규정

### a. 행정심판 청구 및 접수

심판청구는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는 것을 안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를 적은 심판청구서를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 b. 청구기간

조세심판원에 청구된 경우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즉, 세금고지가 있음을 알거나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세무서장 등에게 청구된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특례조항이 있다. 즉, 세무서장에게 당해 조세심판의 심판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한다. 당해 청구서가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만일,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c. 심판청구서의 보정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적법하지 않으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3조, 제81조)

#### d. 증거서류 등의 제출

심판청구인은 세무서장 등의 답변서에 대해 항변하기 위해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고, 증거서류가 제출되면 조세심판원장은 증거서류의 부분을 지체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71조)

#### e. 재결서 송달

심판청구인에 대한 심판결정서의 송달은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조세심판원에서 심판결정서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3조)

### 3. 소청심사위원회

#### 가. 최근 3년간 사건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접수	인용			불인용 (기각, 각하 등)
		소계	취소	변경(무효 포함)	
2014년	864	304	21	283	527
2015년	881	340	35	305	536
2016년	885	311	40	271	549

#### 나. 온라인 심판 청구 현황

〈단위 : 건, %〉

구분	전체 청구	온라인 청구	온라인 비율
2014년	864	104	12
2015년	881	131	14.8
2016년	885	136	15.4

## 다. 행정심판 절차 규정

### a. 행정심판 청구 및 접수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려는 공무원은 1.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2. 소속기관명 또는 전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3. 피소청인, 4. 소청의 취지, 5.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6. 처분사유설명서 등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소청절차규정 제2조)

### b. 청구기간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처분사유서를 받은 날부터 또는 불리한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소청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소청절차규정 제7조의2)

### c. 청구서 보정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흠결이 경미한 경우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소청절차규정 제6조)

보정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 소청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소청절차규정 제6조)

### d. 청구인의 진술권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술로 심문할 수 있으며, 출석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않은 소청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소청절차규정 제10조)

e. 증거제출

소청당사자는 증인의 소환 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소청절차규정 제11조)

f. 결정서의 송부

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해 결정한 때에는 1. 소청당사자의 표시, 2. 결정 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을 기재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그 정본을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소청절차규정 제15조, 제16조)

라. 온라인 행정심판 절차 규정

「국가공무원법」이나 「소청절차규정」에 온라인 청구의 제출 근거나 법적 효력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온라인 청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가. 사건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총계	15,053	2,884	2,835	3,679
○ 토지수용	12,405	2,610	2,412	2,417
수용재결	6,903	1,457	1,321	1,270
이의재결	5,502	1,153	1,091	1,147
○ 행정심판	641	83	143	147
개발부담금	626	83	138	145
택지부담금	0	-	-	



구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과밀부담금	1	-	-	1
훼손(보전)부담금	9	-	5	1
기반시설부담금	5	-	-	-
○기타	1,063	176	274	216
손실보상	435	64	135	118
협약성립	282	64	40	33
기타(경정)	296	48	99	65
○사업인정	944	15	6	899
사업인정	50	15	6	5
사업인정의제	894	-	-	894

#### 나. 온라인 심판 청구 현황

최근 3년간 온라인을 통해 심판이 청구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정보공개 내용)

#### 다. 심판청구 절차 규정

##### a.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83조)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신청의 요지 및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재결서 정보의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5조)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이의신청서에 1. 신청인이 재결서의 정보를 받은 날짜 등이 적힌 우편송달통지서 사본,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여 행한 감정

평가서 및 심의안건 사본, 3. 그 밖에 이의신청의 재결에 필요한 자료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5조)

이의신청은 재결서의 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83조제3항)

b.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행정심판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부과에 불복하려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리 의결한다.

이 경우 심리·의결기관만 다를 뿐 청구기간, 접수, 등은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이 적용된다.

##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가. 최근 3년간 사건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접수	처리							합계
		인용			불인용				
		취소	변경	소계	기각	각하	취하 등	소계	
2013년	494	118	67	185	186	46	70	302	487
2014년	606	211	46	257	223	78	56	357	614
2015년	674	165	33	198	298	60	61	419	617

### 나. 온라인 심판 청구 현황

온라인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는 있으나, 온라인 통계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정보공개 답변)

## 다. 행정심판 절차

### a. 행정심판 청구 및 접수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9조)

소청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1.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 2. 청구인의 소속학교명 또는 전 소속학교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3. 피청구인(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처분권자를 말하되, 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제청권자를 말한다.), 4.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6. 소청심사청구의 취지, 7. 소청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와 그 부분 1부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조)

### b. 청구기간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교원지위법 제9조)

### c. 청구서 보정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흠결이 경미한 경우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6조)

### d. 청구인의 진술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청구기간의 경과 등 소청심사의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는 때와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그 처분의 취소결정을 하는 때는 당사자의 서면진술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또한 심사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술로 신문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3조)

#### e. 증거제출

당사자는 증거물 그 밖에 당해 소청사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또한 당사자는 증인의 소환 또는 증거물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을 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당사자의 증인소환 또는 자료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4조)

#### f. 결정서의 송부

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결정서에는 1. 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이 기재되어야 한다.(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9조)

심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부하였으나 그 결정서가 심사위원회의 과실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소·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서의 송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심사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게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결정서는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라. 온라인 행정심판 절차 규정

「교원지위법」이나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 온라인 청구의 제출 근거나 법적인 효력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온라인 청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 6. 특허심판원

### 가. 최근 3년간 사건처리 및 온라인 청구 현황

구분	접수매체				합계
	온라인		우편 / 서면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2013년	12,418	97.1	374	2.9	12,792
2014년	11,444	97.3	315	2.7	11,759
2015년	13,113	95.1	682	4.9	13,795
2016년	11,537	98.1	226	1.9	11,763

### 나. 행정심판 절차 규정

#### a. 심판 청구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판청구서에는 1.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소재지,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심판사건의 표시, 3.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특허법 제140조 제1항)

#### b. 심판청구 기간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c. 심판청구시 첨부서류

정정심판의 경우 정정한 명세서 및 도면을,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경우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 등록상표)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통상실시권 허락심판의 경우 실시

를 요하는 자기의 특허의 번호 및 명칭,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 디자인의 번호·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디자인의 통상 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 기재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특허법 제140조 제3항, 제4항, 제5항)

#### d. 심판청구서의 수리

특허심판원장은 접수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방식심사를 하고 이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 e. 심판청구서의 보정

심판청구서가 법령에 정한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흠결의 보정을 명한다.(특허법 제141조 제1항)

### 다. 온라인 행정심판 절차 규정

「특허법」 및 「특허법 시행규칙」은 온라인을 통한 행정심판 청구서의 제출 근거 및 그 효력, 전자 문서 제출, 인증, 통지 등에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 「특허법」

제2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제출방법,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의3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①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 등은 그 통지 등을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는 통지등의 종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한 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청 또는 「특허협력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제2조(xix)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서류

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허출원인·특허취소신청인·심판청구인 그밖에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송달하는 서류

제3조의2(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등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9조의6(온라인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을 하려는 자는 제9조의3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8(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제63조(증거의 첨부) ① 제57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답변서·의견서, 그 밖에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면에는 필요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자료가 서면인 때에는 그 등본을, 도면·견본 또는 물건인 때에는 실물에 같음할 수 있는 복사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 또는 물건을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관련 서류에 견본 또는 물건을 별도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가. 최근 3년간 사건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기각	취소	각하	취하	합계
2013년	2,846	260	49	9	3,164
2014년	2,642	252	34	12	2,940
2015년	2,896	180	31	11	3,118

### 나. 온라인 심판 청구 현황

〈단위 : 건〉

구분	전체 청구	온라인 청구
2013년	3,164	2
2014년	2,940	1
2015년	3,118	1

### 다. 행정심판 절차

#### a. 행정심판 청구 및 접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단에 제기하되, 그 결정 등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불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단 소속기관을 거쳐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

재심사 청구는 1.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재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등의 내용, 3.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4. 재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재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 b. 청구기간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 c. 청구서 보정

심사 청구가 법령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단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

#### d. 증거제출 등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한 조사 신청은 1. 심사 청구 사건명,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출석할 관계인의 이름 및 주소, 4. 제출할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의 표시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 5. 감정할 사항 및 그 이유, 6. 출입할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의 명칭·소재지, 질 문할 사업주·근로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이름·주소, 검사할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의 표시, 7. 진단 받을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 e.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험급여결정 등에 대한 심사 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 IV. 온라인 심판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1. 조세심판원

#### 가. 문제점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심판사건을 접수하기는 하나, “심판청구서를 사이버로 접수하는 경우 심판청구서 원본이 필요하니 심판청구일부터 3일 이내에 심판청구서 원본(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날인)과 증거서류 각 2부를 우체국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조세심판원 홈페이지)

조세심판원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심판 사건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나, 오프라인 원본을 필요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판사건 접수 이외에 증거서류 제출, 사건청구서 보정 등 접수 이후의 사건 진행 절차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

한편, 조세심판의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일 심판청구가 사이버로는 90일 이내에 접수되었으나, 오프라인을 통한 서면제출이 90일을 경과하는 경우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인지 아무런 규정이 없어 법적인 공백상태에 놓여 있게 되므로 국민의 권익구제와 관련하여 조속한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요한 문제로서, 만일 위 기간을 지나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81조)

## 나. 개선 방안

조세심판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심판청구 접수의 법적 효력을 서면에 의한 청구와 동일하도록 국세기본법에 분명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즉, 사이버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통하여 접수된 심판청구의 경우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접수가 되었을 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라는 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거나 또는 행정심판법 제52조 제4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일, 온라인을 통한 행정심판 청구에 아무런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을 통한 청구서의 제출은 심판청구 기간과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조세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최근의 정보기술 발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세심판절차에 있어서도, 심판청구, 청구서 보정, 증거서류나 보충서면 등 각종 서류 제출에 있어 온라인을 통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심판절차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명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 2.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가. 문제점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심판청구가 상당한 비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최근 3년 동안 매년 10% 이상)

온라인을 통해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소청절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청구서의 접수, 증거서류의 제출 등의 효력에 있어 「국가공무원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령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바, 온라인을 통해 심판청구가 된 사건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 무효인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 나. 개선 방안

온라인을 통한 소청절차 운영의 법적인 공백을 피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이나 「소청절차 규정」에 온라인 행정심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극히 미미하기는 하나('13년 2건, '14년 1건, '15년 1건) 온라인을 통한 행정심판이 청구되었고, 해당 법률에 준용 규정을 두고 있음으로써 법적인 공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3항에 따르면,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음으로써 온라인 행정심판 절차 진행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72조에 따라 적법한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온라인 심판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심판청구 등 운영이 극히 미미한 바, 온라인을 통한 심판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개발부담금 등 부과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토지수용 관련 재결에 있어 온라인을 통한 행정심판 접수는 최근 3년간 전무하고, 온라인 심판에 대해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아무런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법적 근거의 마련과 실질적인 운영 활성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심판청구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오프라인을 통한 심판절차 진행이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심판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온라인 절차 진행의 근거와 법적 효력 등에 대해 명확하고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온라인 심판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최근 3년간 청구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14.8% → 22.3% → 27.5%) 그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없는바, 온라인 청구의 편의성과 접근성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V. 결론



-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① 온라인을 통한 행정심판 제도 운영은 실제로 온라인을 통한 청구는 가능하나, 온라인 청구의 법적인 효력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유형(조세심판원), ② 실질적으로 많은 비중의 온라인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근거 법령에 온라인 심판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유형(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③ 온라인 심판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심판청구 등 운영이 극히 미미한 유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④ 온라인 심판청구 절차 진행에 대한 아무런 법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온라인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 진행이 전무한 유형(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⑤ 온라인 심판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심판 절차 운영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는 유형(중앙행정심판위원회, 특허심판원)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 그간의 사회 변화나 기술 발전, 국민 편의 향상 및 권익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온라인 심판청구를 비롯한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법령에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기관의 경우 온라인 시스템 구축,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심판 절차 진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입법평가 Issue Paper 17-15-⑤

## 온라인을 통한 행정심판 수행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발행일 2017년 10월 31일

발행인 이익현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044)861-0300 F.044)868-9913

등록번호 1981.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2.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8-89-6684-778-5 93360

# 온라인을 통한 행정심판 수행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044)861-0300 F.044)868-9913 <http://www.klri.re.kr>



ISBN 978-89-6684-778-5  
값 5,500원